

군포도시공사 제4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2021년 6월 3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76호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부적격자의 수의계약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서 해임된 자가 취업한 업체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미 래 기 획 부
입 안	직 위 성 명	미 래 기 획 부 장 이 현 동
	직 위 성 명	안 전 감 사 팀 장 이 영 남
자	담당자 성명 (전 화)	황 기 성 (390-7606)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p>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공사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항 신설></p>	<p>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 ----- ----- -----</p> <p>②----- ----- ----- -----</p> <p>③ <u>계약담당자는 부적격자의 수의계약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서 해임된 자가 취업한 업체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u></p>	

관계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